성주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 검토보고서

1. 제 안 자 : 김성우 의원 외 6인

2. 제정이유

○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제8조 및 대통령령인「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」에 따라 주민의 대표자인 지방의회의원의 행동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성주군의회 의원의 청렴하고 공정한 직무수행을 기하여 건전한 지방의회 풍토 조성에 이바지 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○ 조례의 제정 목적, 정의, 적용 범위 등을 정함(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)
○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한 사항을 규정 (안 제4조부터 제7조까지)
○ 부당이득의 수수 금지 등을 규정(안 제8조부터 제11조까지)
○ 건전한 지방의회 풍토의 조성을 위한 규정(안 제12조부터 제17조까지)
○ 행동강령 위반 시 조치 사항을 규정(안 제18조, 제19조)
○ 행동강령 조례 운영 자문위원회 설치 등(안 제20조부터 제33조까지)

4. 참고사항

○ 관계법령 :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
,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(대통령령)
○ 기 타 : 조례안예고(2019. 3. 6 ~ 2019. 3. 15)

5. 검토의견

○ 본 조례안은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 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제8조에 의거 대통령령인 「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」 제정 및 「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」의 시행에 따라 주민의 대표자인 지방의회 의원의 행동기준을 마련하는 것으로써,

○ 법리 검토결과, 관련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자치법규 입안 심사기준에 합당하며 우리군의회 의원의 청렴하고 공정한 직무수행과 건전한 지방의회의 풍토조성을 위해 본 조례를 제정·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.